

[문서번호] RA-I-05-A

ESG위원회 규정

기본정보

사규분야	기본사규
사규입안팀 / 역할	건설기획팀 / 내용작성, 품의, 해석
협의팀 / 역할	-
사규관리팀 / 역할	건설기획팀 / 내용검토, 조정, 문구작성, 배포
적용범위	전사

이력사항

번호	시행일자	구분	주요내용	근거문서	승인자
01	23.12.20	제정	ESG·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 제정	건설기획 2023-735	이사회

- 목 차 -

제 1 조 [목적]	3
제 2 조 [적용범위]	3
제 3 조 [구성]	3
제 4 조 [위원장]	3
제 5 조 [위원회]	3
제 6 조 [위원회의 소집]	4
제 7 조 [결의 방법]	4
제 8 조 [부의사항 등]	5
제 9 조 [관계인의 출석]	5
제 10 조 [의사록]	5
제 11 조 [통지의무]	5
제 12 조 [간사]	6
제 13 조 [경비]	6
제 14 조 [규정의 개폐]	6
부칙	6
제 1 조 [시행일]	6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주식회사 HJ중공업(이하 "회사" 라 한다)의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범위]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[구성]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까지로 한다.

제4조 [위원장]

- ① 위원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[위원회]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사정에 따라 개최여부 및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6조 [위원회의 소집]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 [결의 방법]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위원이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 [부의사항 등]

-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의한다.
 1. ESG 정책
 2. ESG 관련 규범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3. 기타 ESG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
 1.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대외 보고서
 2. ESG 대외 평가 관련
 3. 주요 환경이슈 및 환경경영 성과 등
 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ESG 관련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[관계인의 출석]

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,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10조 [의사록]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1조 [통지의무]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가 그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는 위원회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2조 [간사]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제13조 [경비]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4조 [규정의 개폐]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제1조 [시행일]

1.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